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 동반시설 설치 포함〉

■ 한정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877호)

2024. 9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전문위원 서기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한정애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6. 24.
3. 회부연월일 : 2024. 6. 2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,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,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%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「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이 법에 따른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(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)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‘중앙관서의 장 등’이라 한다)이 민방위 준비로서 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<신설>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<u>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(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한다)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하고, 일정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에게 중앙관서의 장 등이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¹⁾

1) 「민방위기본법」

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.

1.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
 2.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(備置) 및 정비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·정비
- ② 중앙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.

개정안은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려는 것으로,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7.4%에 이르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25.4%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[반려동물 가구 수 및 비중(2022년)]

(단위: 명, %)

합계	반려동물 비양육	반려동물 양육								
		다른 거주지에서 양육	현 거주지에서 양육							
			합계	개	고양이	물고기	햄스터	거북이	새	기타
5,000 (100.0)	3,627 (72.5)	101 (2.0)	1,272 (25.4)	961 (19.2)	352 (7.0)	93 (1.9)	19 (0.4)	13 (0.3)	13 (0.3)	30 (0.6)

자료: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, 「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」

다만, 민방위 준비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민방위사태를 대비하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이란 점에서, 반려동물 동반시설의 설치를 민방위 준비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, 동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²⁾.

-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
 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·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
 3.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
- 2) 참고로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이후인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「Robert T.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」를 개정하여 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상대비 운영계획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, ②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및 해당 반려동물에게 구조, 돌봄, 피난처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.

[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]

시설 및 장비	내용
대피시설 대피호	- 지하실·지하층·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
소방 및 방공장비	- 소방장비: 소화기·갈퀴·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.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 - 경보장비: 사이렌, 옥내방송시설, 확성기, 비상벨, 유선경보장비, 무선경보장비, 위성경보장비, 방송 연결장비, 주요 기관 연결장비,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- 등화관제시설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, 옥내외등의 소등장치, 가로등의 소등장치,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
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	- 물자: 자루, 모래주머니, 고정용 끈, 목재, 못,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- 장비: 삽·곡괭이·톱·지렛대·장도리·망치·펜치, 그 밖의 공구 및 운반 장비
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	-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: 방독면, 탐지키트·탐지지 등 탐지 장비·물자, 보호물자, 신경 해독제, 피부 제독제, 오염 표지판, 지역 제독물자·장비,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·장비 등 - 의료물자: 구급낭 등 응급처치용품, 환자용 들것 및 간이침상
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	-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, 급수탱크, 간이 여과조,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
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·시설 및 장비	- 위장(偽裝)시설·물자: 위장 망, 위장 페인트, 위장 식수(植樹), 조경 - 방호시설: 방호벽, 모래주머니 - 대피용 물자: 비상조명등(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), 양초, 성냥, 라이터,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-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·소독제 등 소독 및 방역 물자

자료: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

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반려동물의 소음, 배설물 등으로 인한 대피환경의 악화를 우려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를 반대하는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, ② 밀집한 지하 대피시설물에 반려동물 동반 시 알레르기, 위생문제, 물림 사고 등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, ③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동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④ 민방위 대피시설의 대부분³⁾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민간소유의 시설물이어서 소유주의 승인을 얻어 지정되는데, 반려동물 동반시설 설치 시 소유주가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3)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(16,820개) 중 민간 소유 건물에 지정된 대피소 비율: 14,112개(83.9%)

〈참고: 반려동물 동반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기관 의견〉

○ 2024년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(2024. 7. 2. ~ 7.12.)

– 총 4개 지자체 의견제출(서울특별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-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부분 민간 소유인 지하주차장 등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 동반대피에 관하여 강제할 수 없음

*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지정은 권장할 시, 건물 소유자가 대피시설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대피시설의 주민수용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

-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창문이 없는 지하공간*으로 반려동물과 동반대피 시, 반려동물에 의한 위생 문제 등 2차 피해(대피소 혼잡, 병균, 냄새, 개물림 등) 발생 가능

*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기순환이 어려운 밀폐지역으로, 반려동물의 냄새, 동물 알레르기, 배설물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

-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(운송용 우리 등)을 설치할 경우, 이에 필요한 설치 비용, 유지관리비 등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시설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음

문 의 처

02)6788-5349